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03
----------	-------

발의연월일 : 2025. 8. 18.

발 의 자 : 서영교 · 박희승 · 임오경
정준호 · 양부남 · 박홍배
송재봉 · 김문수 · 이성운
최혁진 · 박선원 · 김태선
복기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복지 확충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및 면허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될 예정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제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으로써 사회복지 확충과 약자에 대한 구제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27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27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2025년”을 “2027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2025년”을 “2027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 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 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u>2025년</u> 12월 31일까 지 감면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u>2027년</u>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 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 지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 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 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③ ----- ----- ----- ----- ----- ----- ----- ----- ----- -----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④ (생략)

⑤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

---2027년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u>2025년</u>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⑥ (생 략) ⑦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u>2025년</u>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⑧ (생 략)	----- <u>2027년</u>----- -----. ----- -----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 ----- ----- -----<u>20</u> <u>27년</u>-----. ⑧ (현행과 같음)
---	---